

# FTA시대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VIAC 중재규칙과 KCAB 국제중재규칙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Vietnam's  
Arbitration System in the FTA Era

김성룡\*\*

Sung-Ryong Kim

## 〈목 차〉

- I. 서 론
- II. 베트남 중재제도 개관
- III. 베트남 중재법령 및 VIAC 중재규칙의 특징 분석
- IV. 활용방안
- V. 결 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제어 : VIAC, KCAB, 베트남 상사중재법령, VIAC 중재규칙, KCAB 국제중재규칙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2696).

\*\* 경북대학교 경상대학 부교수, 주저자. jackie3@knu.ac.kr.

## I. 서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여러 국가와 경제는 물론 안보, 외교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 한다)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미국, EU, ASEAN 등 대륙별 거대 경제권과 FTA 체결로 글로벌 허브로서의 자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FTA가 발효됨으로써 많은 한국기업들은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까지 맞물려 더 많은 기업 및 무역업자들이 동남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이미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 각각 양자간 FTA를 체결한 바 있고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교역규모가 크거나 향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와는 개별 FTA를 추가로 체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베트남 FTA를 들 수 있다.

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가 15번째로 체결한 무역협정이다. 베트남은 1986년 개방정책을 표방하며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국가로서 1995년 아세안 공동체에 가입했으며 2001년 거대 경제권인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7년 WTO에 가입함으로써 자유무역은 물론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의 발판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 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한 이래 2007년 아세안과 FTA를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5년 베트남과 별도의 FTA를 체결하면서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양국 간 경제 전반의 시장개방은 물론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장접근의 용이성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베트남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향후 보다 많은 기업 진출 및 생산설비 구축 등 직접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베트남과 FTA 발효 이후 교역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생산성은 높아졌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양국 무역업자 간 국제분쟁 발생 가능성 역시 기존보다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국경을 넘어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연결되고 계약 구조도 복잡해지는 등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베트남 법률 및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무역 분쟁 발생 시 주로 이용되는 중재제도는 베트남 교역이 증대되는 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라 볼 수 있다. 특히 베트남 당사자와 발생한 상사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위험관리 방안으로서 베트남 중재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현재까지 진행된 베트남 중재제도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박진아(2016)<sup>1)</sup>의 연구는 베트남 중재의 동향과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유의점에 대해 분석

하고 있다.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한 중재적격성, 준거법, 중재인, 중재절차 등에 관하여 검토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상사 이외에 기타 중재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분석하고 준거법에 따라 국내·외 중재를 구분하는 점, 중재인의 증거수집에 관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 등에 대해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오현석(2014)<sup>2)</sup>의 연구는 2012년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의 중재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베트남 중재의 특징을 분석하고 실무적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를 통해 VIAC의 외국적 요소에 대한 해석과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국제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VIAC 규칙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선정(2013)<sup>3)</sup>의 연구는 201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 개정에 따른 주요 내용과 베트남 상사 중재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위 논문에서는 베트남 상사중재규범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2011년 상사중재법, 2011년 중재법령 제정에 따른 중재제도 이용 촉진 가능성을 진단하면서 베트남 중재제도가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UNCITRAL의 모델법안을 전면 수용한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상찬(2009)<sup>4)</sup>의 연구는 아시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를 비교 분석하였다. 위 논문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등 7개 국가의 ADR 개요 및 주요 ADR 기관을 제시하고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ADR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ADR의 범위와 특성, 이용에 관한 정책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아시아에 적합한 모델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베트남과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간 교역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제상사분쟁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주목하고 베트남 중재제도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에 개정된 베트남 상사중재법령 등 제도적 변화와 대외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의 개정 중재규칙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국내 무역업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적 유의점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업인들에게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라 한다)의 국제중재규칙과 상호 비교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가 기업의 위험관리는 물론 중재 활용 전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 박진아, “베트남 중재법제와 유의점”, 법학연구 제47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pp.415-457.

2) 오현석,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제와 중재절차”, 국제상학 제2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pp.361-382.

3) 김선정, “201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3, pp.97-122.

4) 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pp.67-91.

## II. 베트남 중재제도 개관

### 1. 베트남 중재법제

베트남은 1963년 대외무역중재위원회(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ttee)와 1964년 해상중재위원회(Marine Arbitration Committee)를 각각 설치하여 국제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sup>5)</sup> 그러나 이들 위원회는 별도의 중재규칙을 통해 중재 사건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중재기관과는 달리 정부산하조직으로 독립된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들 위원회가 기관의 독립성과 자주성이라는 중재 본연의 특성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1986년 도이모이(Doi Moi)정책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개방과 개혁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중재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sup>6)</sup> 우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1994년 상사중재에 관한 법령(Decree)<sup>7)</sup> 및 2003년 상사중재에 관한 조례(Ordinance)를 공포한 점을 들 수 있다.<sup>8)</sup> 그리고 2010년 단일법으로서 상사중재법(Law on Commerce Arbitration)을 별도로 제정, 2011년부터 베트남 상사중재에 적용하고 있다.<sup>9)</sup> 아세안에 속한 국가 중에는 국제와 국내를 구분하여 중재법제를 이원화시킨 국가도 있지만 베트남의 경우는 일반적인 대륙법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재법만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sup>10)</sup>

베트남 상사중재법은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2010년 6월 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재법에 이어 상사중재법령을 제정하여 동년 9월 발효시킨 바 있다.<sup>11)</sup> 중재의 범위 및 방식, 중재기관과 중재인, 중재절차 및 당사자 권리, 법원의 관여, 중재판정의 집행 등 총 13장으로 구성된 베트남 상사중재법은 UNCITRAL 모델법을 수용하여 제정하였다. 중재법 상의 중재절차를 간략하게 살펴 보면, 우선 신청서가 중재센터에 접수된 때 개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 후 10일 내에 피신청인에게 문서를 송부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답변서는 신청서 수령일 기준 30일 이

5) Corinne Nguyen & Anh Duong Vu, 'Arbitration in Vietnam',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 31, No5, 2014, p.676

6) 김상찬, 전계논문, p.81.

7) Decree on Commercial Arbitration No.116-CP.

8) Ordinance on Commercial Arbitration No.08/2003/PL-UBTVQH.,

9) 박진아, 전계논문, p.418.

10) 김영주, "ASEAN 국가들의 외국중재관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법제 및 판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 p.28.

11) 김선정, 전계논문, p.102.

내에 중재센터에 제출할 것과 심리진행은 비공개임을 규정하고 있다.

2013년 베트남 대법원은 상사중재법에 관한 지침을 결의함으로써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의 유효성이나 임의중재(Ad-hoc Arbitration),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내용 등 중재법 해석에 중요한 지침을 마련하였다.<sup>12)</sup> 이와 같은 조치는 베트남 상사중재에 대한 외국기업의 신뢰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고 본다. 그리고 2018년 상사중재법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더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중재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정부는 1994년 상사중재에 관한 법령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5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1958,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가입함으로써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베트남 법원에서 승인 및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일지라도 법에서 정한 취소나 거부 사유가 아니라면 베트남 법원을 통해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됨을 의미한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개방정책의 하나로 국제중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절차 규정은 2004년 제정된 베트남 민사소송법 제6편에 규정되어 있다.<sup>14)</sup> 따라서 베트남 영토 이외의 지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나 베트남 내에서 내려진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해당 절차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이처럼 상사중재법제의 제·개정 및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베트남 법원의 승인 및 집행이 정당하게 보장된다면 베트남 진출을 꾀하는 외국기업들의 유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는 물론 향후 베트남 중재 활성화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베트남 정부가 교역 확대를 위해 상사중재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외국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이하 ‘워싱턴협약’이라 한다)’에는 가입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워싱턴협약은 외국인 투자자의 지위 및 투자를 보장하고 분쟁 발생 시 주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라 한다)<sup>15)</sup>에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가 국제교역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12) 박진아, 상계논문, p.420.

13) Nguyen Ngoc Minh, Mnguyen Thi Trang and Nguyen Thi Mai Anh, “Vietnam”, *Asia-Pacific Arbitration Review*, Vol 10, 2020, p.119.

14) 박진아, 전계논문, pp.419-420.

15) 국제투자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1966년 세계은행 산하에 설립된 중재기관이다. 1987년 영국회사가 스리랑카 정부를 상대로 영국-스리랑카 BIT에 근거하여 ICSID에 신청한 사건이 최초이다. 그 후 국제투자협정이 급증하면서 ICSID 분쟁사건도 증가하게 되었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중재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된 협약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검토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2. 베트남 중재기관

베트남에는 현재 다수의 중재기관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베트남 법무부의 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현재 22개의 중재기관들이 베트남 내에서 운영 중이다.<sup>16)</sup> 특히 그중에서도 국제상사분쟁과 관련하여 가장 잘 알려진 중재기관은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이하 ‘VIAC’이라 한다)이다.<sup>17)</sup> VIAC은 앞에서 언급한 대외무역중재위원회와 해상중재위원회가 합병함으로써 1993년 설립된 기관이다.<sup>18)</sup> 하노이에 중재센터를 두고 있으며 이외에도 호치민 시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중재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9년 신규로 접수된 사건은 총 274건으로 2018년 대비 52.2%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전체 등록 사건 중 40%가 국제사건으로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분쟁 및涉外적 요소(Foreign Elements)가 포함된 사건이다.<sup>19)</sup>

그밖에도 Can Tho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CCAC)<sup>20)</sup>, Ho Chi Minh City Commercial Arbitration Centre(TRACENT)<sup>21)</sup>, Financial Commercial Arbitration(FCCA), ASEAN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ACIAC)<sup>22)</sup>, Pacific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PIAC)<sup>23)</sup>, Vietnam Financial Banking Arbitration Centre(VIFIBAR)<sup>24)</sup>, Indochina Trade Arbitration Centre(ITA C)<sup>25)</sup> 등의 기관이 독자적인 중재인 리스트를 가지고 베트남에서 운영 중에 있다.

특히 2017년 이후 베트남 정부가 국제분쟁에 있어 국제중재와 국제조정 등 대체적분쟁 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공표한 이후 규정을 개정하거나 중재기관을 신설하기 시작하였다.<sup>26)</sup> 예를 들어 2018년 1월 Ho Chi Minh City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HCCAA)를 설립하여 국제무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더

16) Nguyen Manh Dzung, Dang Vu Minh Ha, “VIETNAM”, Arbitration Guide IBA Arbitration Committee, 2018, p.3.

17) *ibid.*, p.3. ; 오현석, 전제논문, p.367.

18) Corinne Nguyen & Anh Duong Vu, *op.cit.*, p.676.

19) VIAC homepage(<http://www.viac.vn/en/statistics/2019-statistics-s30.html>)

20) Can Tho 시에 위치한 중재기관으로 1999년 설립되었고 총 12명의 중재인이 등록되어 있다.

21) 호치민(Ho Chi Minh) 시에 위치한 중재기관으로 1997년 설립되었고 총 27명의 중재인이 등록되어 있다.

22) 하노이(Hanoi) 시에 위치한 중재기관으로 1997년 설립되었고 37명의 중재인이 등록되어 있다.

23) 호치민(Ho Chi Minh) 시에 위치한 중재기관이다. PIAC에는 현재 270여명의 중재인이 있으며 이 중에서 170명이 외국국적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PIAC는 다른 국제중재기관들처럼 1인 또는 3인 중재판정부로 구성이 가능하며 상사분쟁 이외에 투자, 금융, 은행, 건설, 운송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24) 2012년 설립되었으며 7명의 중재인이 등록되어 있다.

25) 2014년 설립되었으며 18명의 중재인이 등록되어 있다.

26) Nguyen Ngoc Minh, Nguyen Thi Trang and Nguyen Thi Mai Anh, *op.cit.*, p.119.

육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HCCAA에는 현재 100명 이상의 중재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설립취지에 맞게 국제중재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가 국제중재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베트남 내에서 국제중재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베트남에 있는 중재기관들이 아직은 국제중재를 주로 다루지는 않거나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당사자 입장에서는 베트남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외국 기업들은 오히려 ASEAN에 위치한 대외적으로 잘 알려진 국제중재기관을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국제중재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베트남 정부 및 중재기관들은 국제적 흐름에 맞는 제도 등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할 것과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함이 마땅할 것이다.

### Ⅲ. 베트남 중재법령 및 VIAC 중재규칙 특징 분석

#### 1. 베트남 중재법령

베트남 상사중재법은 명칭에 나타나 있듯이 ‘상사’로 중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최근 국제중재의 추세가 상사분쟁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분쟁해결에도 이용되기 때문에 베트남 중재를 다소 제한적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과거 중재 범위를 열거했던 방식에서 현재는 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또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상인인 경우로 범주화하여 포괄적으로 확대시켰기 때문에 상사중재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7)</sup>

그리고 중재제도 역시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부가 2018년 9월 상사중재법령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을 들 수 있다.<sup>28)</sup> 우선 중재기관 등록절차를 단순화시켰다. 개정 전에는 기관 등록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외국중재기관의 베트남 내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18년 개정을 통해 중재기관 등록절차를 단순화시켰고 외국중재기관의 베트남 진출 역시 보다 수월해졌다. 실제로 2019년 12월 17일 대한상사중재원은 최초로 하노이에 지부를 설치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따라 보다 많은 한국기업이 하노이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국제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7) 김선정, 전제논문, p.103.

28) Decree No. 124/2018/ND-CP; Nguyen Ngoc Minh, Mnguyen Thi Trang and Nguyen Thi Mai Anh, op.cit, p.119.

다음으로 법원 판결이나 결정, 승인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한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중재와 달리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국제중재는 법원의 승인 및 집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승인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법원은 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거나 중재판정의 취소 근거로 삼고 있다.<sup>29)</sup> 이는 뉴욕협약에서 공공정책 위반 시 법원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sup>30)</sup> 대신 베트남 법의 기본원칙을 거부사유로 둔 것으로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법원의 태도에 따라 승인 및 집행 결과가 달라질 것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런데 2018년 개정을 통해 법원의 판결, 결정, 승인 등에 관하여 법원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 사이트에 공개토록 함으로써 법원 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시켰다.<sup>31)</sup> 이와 같은 조치는 외국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베트남 법원의 입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도 베트남 법원 판결 등의 투명성을 확인 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베트남 중재의 선진화는 물론 국제무역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2. VIAC의 개정 중재규칙

VIAC은 베트남에서 대내·외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중재기관이다.<sup>32)</sup> KCAB와도 1993년 중재기관 간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무역에 종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중재서비스 지원 및 상사중재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을 합의하기도 하였다.<sup>33)</sup> 따라서 우리 기업입장에서는 향후 베트남 중재를 이용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VIAC 중재규칙의 특징 및 KCAB 국제중재규칙과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VIAC의 개정중재규칙을 중심으로 KCAB 국제중재규칙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토록 하겠다.

### (1) 중재규칙 적용시점에 관한 규정

우선 VIAC 중재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중재규칙은 양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2017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에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VIAC 중재규칙은 중재합의 시점과 관계없이 절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부 국제중재기관들이 중재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규칙

29) 손경환, “베트남에서의 중재판정의 취소”,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한국무역학회, 2015, p.402.

30)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31) Nguyen Ngoc Minh, Mguyen Thi Trang and Nguyen Thi Mai Anh., op.cit, p.119.

32) ibid, p.119.

33)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cab.or.kr>).



을 적용토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sup>34)</sup>

반면에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규칙 중 일부 조항에 대하여 중재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2016년 KCAB 국제중재규칙 부칙을 보면 제32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중 제4항에 해당하는 내용과 ‘제21조 당사자의 추가’ 조항은 시행일 이후의 중재합의가 있는 중재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국제중재규칙에 부합하는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절차 개시 당시 시행 중인 규칙 적용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중재합의 당시 시행 중인 규칙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VIAC은 중재절차 개시 시점만을 기준으로 한 반면, KCAB는 절차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중재합의 시점 역시 규칙 적용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신속절차 규정

VIAC 중재규칙이 2017년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조항 중 하나가 신속절차 규정이다. 신속절차는 일반적인 중재절차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당사자로서는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규정이다. KCAB 국제중재규칙에 따르면 제6장에 신속절차규정(Expedited Procedure)을 별도로 분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제중재기관들도 분쟁당사자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중재제도의 취지를 살려 신속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VIAC 역시 2017년 중재규칙을 개정하면서 신속절차 규정을 포함시킨 점은 최근의 국제중재 추세를 반영함은 물론 중재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증거라 판단된다.

그러나 VIAC의 신속절차는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우선 VIAC이나 KCAB의 신속절차는 당사자합의에 따라 적용한다는 전제는 동일하지만, VIAC의 경우 최초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거나 사후중재합의를 할 때 신속절차규정을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적용할 수가 없다(VIAC 중재규칙 제37조 제1항). 이에 비해, KCAB 중재는 당사자합의가 없어도 만일 분쟁의 신청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KCAB에서는 중재 신청금액이 5억 이하 국제중재사건인 경우에는 신속절차 대상이 된다. 그러나 VIAC의 경우 당사자들이 사전에 신속절차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형식적인 절차로만 남게 될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VIAC에서 신속절차를 진행할 경우 중재인의 의도에 따라 절차의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VIAC의 신속절차 규정은 매우 간단하게 명시되어 있다. 특히 중재인의 권한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사자 합의가 없다

34) Harald Sippel, “Arbitrating Under the New Arbitration Rules of 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Tips for Korean Companies”, Korean Arbitration Review, Vol. 8, p.35.

면 신속절차는 단독중재인이 선임되고 해당 중재인은 VIAC 규칙에서 규정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VIAC 중재규칙 제37조 제2항). 따라서 VIAC의 신속절차 규정은 중재인의 권한으로 절차에 필요한 기한을 자의적으로 축소하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절차가 진행될 경우 중재인의 태도에 따라 신속절차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어 분쟁당사자가 VIAC의 신속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도 중재인 선정에 매우 주의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반대신청에 대한 가능 여부 및 반대신청 기한의 결정, 분쟁금액 증액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신속절차 규정에 별도로 두지 않아 VIAC에서의 신속절차는 오히려 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도 있다. 반면에 KCAB는 신속절차 규정 안에 반대신청 기한이나 금액 증액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우려가 없으며 중재판정 역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기한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있어 기한에 대한 절차적 예측이 가능하다.

### (3) 복수계약에 대한 중재신청 단일화 규정

VIAC 중재규칙에서는 복수계약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키면서 2개 이상의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2개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를 하나의 중재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VIAC 중재규칙 제6조). 이에 비해, KCAB 규칙에서는 모든 계약에 중재합의가 존재하고 합의의 동일성도 인정되며 다수의 청구가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다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22조). 다만 이에 대한 내용은 사무국에서 판단토록 하여 만일 각 청구들이 별도의 절차진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당사자들은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VIAC과 KCAB 규칙을 비교해보면, VIAC의 경우 판단주체 및 결정기준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VIAC은 이런 청구들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재합의에 기한 것인지 불문하고 하나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KCAB는 이에 대한 판단 주체 및 단일화의 구체적 조건을 규칙에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VIAC 중재규칙에 따라 복수계약의 단일 중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과연 이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 것이며 어떤 기준에 따라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설령 센터에서 결정하여 하나의 중재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추후 절차 진행 중 중재판정부에서 이에 대한 번복이 있을 경우 판단주체로 인한 혼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 (4)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 및 반대신청서에 관한 규정

VIAC 중재규칙을 보면 답변서는 당사자 간 기간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신청 통지, 중재신청서, 중재합의 및 기타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센터로 제

출도록 규정하고 있다(VIAC 중재규칙 제9조). 이때 피신청인이 중재합의 존부 및 유효성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고자 한다면 답변서에 기재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권의 상실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피신청인 신청에 따라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신청을 함께 제기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문서로 답변서와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VIAC 중재규칙 제10조).

반면에 KCAB 국제중재규칙은 중재신청서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9조). 다만 피신청인이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무국이 답변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다고 중재판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 중재절차 중에도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9조 제5항).

VIAC 규칙과 비교해본다면, 우선 답변서 제출연장은 두 규칙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답변서 제출기일에 있어 KCAB는 중재신청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한 반면, VIAC은 중재신청 통지, 중재신청서, 중재합의 및 기타 서류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만일 피신청인이 이들 중 일부 서류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해석 기준에 의문이 든다. 그리고 VIAC의 중재규칙에 따르면 답변서 제출과 반대신청(Counterclaim)을 분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반대신청서는 답변서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서류는 동시에 센터로 제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KCAB는 두 서류 모두 함께 제출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반대신청서와 답변서를 별도의 문서로 작성할 것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답변서 내용 중 반대신청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할 경우 피신청인에게 반대신청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9조 제6항).

따라서 VIAC처럼 반대신청서와 답변서를 분리 및 동시 제출을 의무화한 경우 답변서 제출 이후 절차 진행 중에 반대신청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VIAC 중재규칙은 답변서와 반대신청서 제출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본 사건의 중재판정부에서 판단함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 경우 중재판정부 역시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모호함이 남아 있다.<sup>35)</sup>

##### (5) 병합청구 규정

VIAC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중재절차를 하나로 병합하는 합의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센터가 결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VIAC 중재규칙 제15조). 그리고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복수의 중재절차 중 먼저 개시된 중재절차에 병합됨을

35) Harald Sippel, op.cit, p.35.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병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방 당사자가 절차적 병합을 요구하지만 타방 당사자가 반대할 경우 절차 병합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설령 양당사자 모두 절차 병합에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만일 센터에서 이에 대해 거부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절차 병합은 불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KCAB의 경우 일방당사자 요청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의견과 중재합의, 분쟁성격 및 기타 관련 상황을 고려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의 중재로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중재절차에서 중재인이 1인이더라도 선정된 경우에는 병합할 수 없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23조). 또한 앞에서 살펴본 ‘복수계약에 따른 단일 중재신청’ 조항에 대한 사무국의 판단이 병합청구 규정의 신청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22조).

따라서 VIAC의 병합청구 규정은 KCAB가 일방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재판정부에서 규칙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병합시킬 수 있도록 한 것과 다른 중재절차에서 중재인이 1인이더라도 선정된 경우 병합할 수 없다는 제한조건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면 당사자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센터의 주관적 결정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 (6)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규정

VIAC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인으로 지명 또는 선정된 자는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의심을 야기할 모든 사실을 센터에 적법하게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VIAC 중재규칙 제16조). KCAB 역시 중재인 선정 또는 지명을 수락한 자는 정당한 의심을 야기할 만한 사유를 사무국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10조). 다만 KCAB의 경우 중재인으로 선정 또는 지명을 수락한 자로부터 중재인 수락서와 공정성 및 독립성에 관한 진술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은 진술서를 양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중재인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하였다.

VIAC 중재규칙과 비교해본다면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규정은 양 규칙 모두 가지고 있지만 VIAC의 경우 서면 규정은 별도로 두지는 않았다. 다만 VIAC 중재규칙에 따르면 중재인과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교신이나 사적 만남을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주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중재인이나 베트남 현지 사정에 능통한 중재인이 선임 또는 중재판정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중재인이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에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사건에 임한다는 서명이 포함된 각서나 진술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 중재판정부는 물론 VIAC 중재에 대한

신뢰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 1인 중재를 원칙으로 하는 KCAB와 3인 중재를 원칙으로 하는 VIAC의 경우 과연 중재인들에게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3인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었을 때 의장중재인과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 사이에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에게 의장중재인과 동일한 정도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sup>36)</sup>

### (7) 중재언어에 관한 규정

VIAC 중재규칙에 따르면 섭외적 요소가 없는 경우 베트남어가 원칙이다. 그리고 섭외적 요소가 있고, 적어도 일방 당사자가 외국인 투자자본이 포함된 법인이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VIAC 중재규칙 제23조). 다만 당사자 합의가 없다면 중재판정부가 계약 언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언어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CAB도 VIAC과 마찬가지로 당사자합의가 우선이고 만일 당사자합의가 없다면 계약 언어를 비롯한 모든 관계된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판정부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28조). 다만 VIAC의 경우 중재판정부에서 언어를 결정한다면 하나 또는 복수의 언어를 선정할 수 있어 만일 판정부에서 하나 이상의 언어를 지정한 경우 중재판정문 작성 언어가 불분명할 수 있다. 또한 절차진행 및 중재판정문 작성까지 베트남어를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복수의 언어를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VIAC은 섭외적 요소가 있고, 일방이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법인인 경우 중재 언어를 합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법인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의 자회사가 베트남에 진출하여 베트남 국내회사와 합작투자를 함으로 별도의 기업을 설립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본이 포함된 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해당 회사가 베트남 다른 기업에 투자한 경우 과연 투자를 받은 회사도 섭외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지 기준이 모호하다. 또한 한국 및 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진 자가 베트남에 기업을 설립한 경우 외국인 투자 자본이 있는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센터 또는 중재판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섭외적 요소 및 외국인 투자자본이 있는 법인에 대해 해석할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36) 조인호,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 2014국제중재에서의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가이드라인과 사례연구-”, 『무역상무연구』 제7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8, p.35.

### (8) 심리절차에 관한 규정

VIAC의 중재규칙에 따르면 심리에 대한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가 없다면 중재판정부가 일시와 장소를 정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합의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전화나 화상,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VIAC 중재규칙 제25조). 이에 비해, KCAB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면 당사자들과 예비절차 회의를 거쳐 잠정적인 일정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무국 및 당사자들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18조). 그리고 심리가 개최될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적절한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와 관련하여 VIAC처럼 전화, 화상 등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대면이 없더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중재규칙 내에 별도로 두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와 같이 대면 심리가 어려운 경우 외형적으로는 VIAC 중재규칙이 KCAB 중재규칙보다는 절차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내용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VIAC 중재규칙도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비대면 방식의 심리 진행은 어려울 것이다.<sup>37)</sup> 반면에 KCAB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적절한 절차 단계에서 심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규칙에 정함이 없을 경우 당사자 합의에 따르고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중재판정부가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KCAB 국제중재규칙 제16조 내지 제17조). 따라서 KCAB 역시 당사자 합의나 중재판정부 결정에 따라 비대면으로 전환한 심리 진행은 가능하며 오히려 VIAC 중재규칙이 중재판정부 결정 이전에 당사자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당사자에 따라서는 절차 지연의 이유가 될 우려가 있다.

## IV. 활용방안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 및 차이점으로 우리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 1. 베트남 상사중재법제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베트남은 중재법이 아닌 상사중재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라면 ‘상사’의 범위에 대해 계약 체결 전 확인해

37) Harald Sippel, op.cit, p.37.

두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베트남법이 ‘상사’의 개념을 물품거래는 물론 서비스, 투자, 기타 수익활동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어<sup>38)</sup> 상사중재의 적격성 문제로 인해 중재판정이 취소되거나 법원의 집행거부 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 적격성 문제를 분쟁상대방이 제기하고 이로 인한 다툼으로 절차의 신속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베트남 상법에 따른 상사의 범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계약상대방에게도 확인해 두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베트남 내 중재기관 등록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향후 외국중재기관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하노이에 위치한 대한상사중재원 베트남 지부를 통해 KCAB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절차 진행 가능성이나 베트남 현지 분쟁당사자와 조정 등 ADR에 의한 분쟁의 조기종결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 법원의 판결, 결정, 승인 등에 관하여 법원 사이트에 공개토록 한 점도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법원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관련 내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그밖에 베트남 법원은 국내중재판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집행할 수 있어 외국중재판정에 비해서는 집행절차가 용이한 편이다.<sup>39)</sup> 따라서 클레임관리 및 분쟁해결 측면에서는 최초 계약을 체결할 시점부터 섭외적 요소를 제거한 국내계약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기업 손실을 최소화시킬 전략 역시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2. VIAC 중재규칙

VIAC의 경우 개정 중재규칙 시행일 이후에 개시되는 중재절차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만일 중재합의 당시와 달라진 중재규칙 조항들이 있다면 당사자는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VIAC 중재를 계약서에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향후 예상하지 못한 절차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재 개시 전 반드시 중재합의 시점 이후 규칙 개정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중재합의 시점의 VIAC 중재규칙을 적용할 것을 당사자 간 합의해 두는 것도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KCAB의 경우 국내와 국제로 사건을 구분하고 각각의 중재규칙을 두고 있는 반

38) 김선정, 전계논문, p.103.

39) 박진아, 전계논문, p.451.

면 VIAC은 이에 대한 구분 없이 하나의 중재규칙만 사용하고 있다. 많은 중재기관들이 국내와 국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중재규칙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KCAB의 경우 두 규칙 중 하나를 통해서만 절차 진행이 가능하고 타 중재기관의 규칙이나 UNCITRAL 중재규칙을 이용한 절차진행은 실무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VIAC은 VIAC 중재규칙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른 절차 진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0)</sup> 따라서 중재합의 시 어떤 규칙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VIAC에서 신속절차를 이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중재합의 당시 반드시 신속절차에 대하여 거래상대방과 사전합의를 통해 계약서 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VIAC 중재에서는 중재인의 권한으로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신속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가급적이면 국제중재를 많이 해본 경험 있는 외국인 중재인을 선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제중재기관들마다 비슷한 신속절차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어 국제중재 경험이 많은 중재인일수록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신속절차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VIAC 중재규칙이 복수계약에 대한 중재신청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 조건이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도는 가능하나 거부될 경우 역시 사전에 염두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병합청구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전 합의를 규정하고 있어 중재조항에 병합청구 가능성에 대한 합의를 사전에 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만일 중재신청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거나 병합청구에 대한 센터의 반대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다툼으로 불필요한 절차 지연보다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다.

답변서 제출 관련해서는 VIAC 규칙에 명시된 서류들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중재신청서를 수령했다면 해당일로부터 답변서 제출일을 기산하는 것이 안정적인 것이다. 이는 KCAB를 비롯한 국제중재기관들이 중재신청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족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센터에 별도로 요청하더라도 답변서 제출기일을 중재신청서 수령일 기준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반대중재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로 답변서와 동시에 제출할 것을 VIAC 중재규칙에서는 규정하고 있어 착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심리절차와 관련해서는 KCAB처럼 별도의 예비 회의절차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심리진행 등에 대한 일정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당사자합의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어 직접 심리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절차 진행방법에 대해 사전에 당사자 간 합의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0) Nguyen Manh Dzung, Dang Vu Minh Ha, op.cit, p.3.



그리고 중재언어는 가급적 계약언어로 사전에 중재합의 시 결정해 둘 것을 권한다. 이는 당사자 합의가 없을 경우 중재판정부에서 복수의 언어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상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중재 합의 시 절차 및 판정 언어에 대한 사전 합의를 가급적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그밖에 섭외적 요소 또는 외국인 투자자본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국내기업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계약 체결 전 섭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요소를 미연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VIAC의 중재규칙에는 아직 다른 국제중재기관들의 규칙과 비교하여 없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긴급중재인제도를 들 수 있다. 긴급중재인제도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도 분쟁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 처분(Interim Measure)에 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중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sup>41)</sup> 따라서 긴급중재인제도는 당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임시적 처분에 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VIAC 규칙에는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만일 외국인 당사자가 임시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라면 베트남 법원에 제기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베트남 상사중재법령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VIAC 개정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KCAB 국제중재규칙과 비교분석하였다. 몇 가지 특징을 요약해보면, 우선 중재기관 등록절차를 단순화시킴으로서 외국중재기관도 베트남 진출이 용이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 법적인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무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법원의 판결, 결정, 승인 등에 대해 법원 사이트에 공개토록 함으로서 투명성을 강화한 점이다. 이는 베트남 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공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어 베트남 중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VIAC의 중재규칙은 몇몇 개정을 통해 보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규정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국제중재기관들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신속절차 규정은 명확성이 부족하여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방해될 우려

41) 김성룡, “조선 해운산업의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한 긴급중재인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 p.97-115.

가 있다. 그리고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시 반드시 반대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만 반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답변서에 반대신청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나 답변서 제출 이후 반대신청을 요구하는 경우 VIAC 중재규칙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중재언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판정부에서 복수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담보로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외국기업 입장에서는 중재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으로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로의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별도의 FTA까지 체결되어 있어 베트남 시장 진출에 우리 기업들은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러나 교류가 활발할수록 분쟁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분쟁에 대한 사전 준비 역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분쟁에서 주로 활용되는 중재제도에 대한 이해 및 세부적으로는 베트남 중재제도의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및 활용전략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국제중재제도 연구 역시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19권 제3호, 한국중재학회, 2009.
- 김선정, “201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중재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중재학회, 2013.
- 김성룡, “조선 해운산업의 효과적 분쟁해결을 위한 긴급중재인제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17.
- 김영주, “ASEAN 국가들의 외국중재판정에 관한 승인 및 집행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의 법제 및 판례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중재학회, 2015.
- 박진아, “베트남 중재법제와 유의점”, 『법학연구』, 제47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 손경한, “베트남에서의 중재판정의 취소”,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한국무역학회, 2015.
- 오현석, “200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제와 중재절차”, 『국제상학』, 제29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 조인호, “중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 2014국제중재에서의 이해관계 상충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 가이드라인과 사례연구-”, 『무역상무연구』 제78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8.
- Corinne Nguyen & Anh Duong Vu, “Arbitration in Vietnam”,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31 No 5, 2014.
- Harald Sippel, “Arbitrating Under the New Arbitration Rules of the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Tips for Korean Companies”, *Korean Arbitration Review*, Vol. 8, 2018.
- Nguyen Manh Dzung, Dang Vu Minh Ha, “VIETNAM”, *Arbitration Guide IBA Arbitration Committee*, 2018.
- Nguyen Ngoc Minh, Mnguyen Thi Trang and Nguyen Thi Mai Anh, “Vietnam”, *Asia-Pacific Arbitration Review*, Vol. 10, 2020.
- 뉴욕협약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베트남국제중재센터 중재규칙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  
 베트남국제중재센터(<http://eng.viac.vn/>)

## ABSTRACT

###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Characteristics of Vietnam's Arbitration System in the FTA Era\*

Sung-Ryong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Vietnam's arbitration system and to present measures that companies can utilize in practice. This research considers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focusing on amendments to the Decree on Vietnam Commercial Arbitration Act and amendments to the VIAC Arbitration Rules.

To sum up some features, the decree on the Commercial Arbitration Act simplified the registration procedures for arbitration centers and their branches and made the publication of court decisions and the recognition of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foreign arbitration courts, thereby enhancing transparency.

First of all, the decree on the Commercial Arbitration Act simplified registration procedures for arbitration centers and their branches. In addition, the court strengthened transparency by officially announcing court judgments, recognition, and decisions.

Next, there are some points to note in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VIAC. First of all, the rules of expedited procedure lack clarity. Next, parties should make a separate document for counterclaim and submit it with a statement of defense. In addition, the arbitral language may choose multiple languages by the Arbitral Tribunal unless the parties agree.

Therefore, companies need to take a closer look at their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which is mainly used in international disput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ese arbitration system.

**Key Words** : VIAC, KCAB, Decree on Commercial Arbitration Act, VIAC Arbitration Rules,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A8032696).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Economics &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